

외국인환자 유치 온라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2025년



안 내 문

이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가
온라인 의료광고를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요 위반유형과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외국인환자유치 온라인 의료광고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위반유형을 예시한 것으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온라인 의료광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PART

01

우리 기관 체크해보기!

PART

02

주요 위반유형 및 사례

1. 주요 위반유형
2. 주요 위반사례

- 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② 등록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우리 기관 체크해보기!

구분			체크리스트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 한 법률	1. 외국인환자 유 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 국인환자를 유치하 는 행위	①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 에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외국어 홈페이지에 진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하였나요?	☐
		②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기관이) SNS상 외국어 계 정을 운영하며 상담 및 예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SNS 계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병원 소개, 통역, 예약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하 였나요?	☐
		③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폐업/미갱신 기관 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이 유효한가요?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유효기간(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④ 등록된 국내 네트워크 병원 지점 중 일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네트워크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는 경우, 지점별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되어 있나요?	☐
	2. 등록한 정보(진 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 정 보를 제공하는 행 위	① 의료기관 명칭을 변경해서 광고하는 경우	· 등록한 의료기관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
		②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없이 광고하는 경우	· 현재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있나요?	☐
		③ 전문의 보유 진료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만, 전문의가 있다고 광 고하고 있나요?	☐
		④ 외국인환자유치 지정기관이 아님에도 지정마크 (KAHF)를 사용하는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지정기관(KAHF)가 아닌데, 지정마크 (KAHF)를 사용하진 않았나요?	☐

가이드라인 개요

가이드라인 목적

- ☑ 본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가 온라인 의료광고를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부당광고 의심 행위를 사전에 점검·개선할 수 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적용 범위

- ☑ 주요 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의료광고 등
 - *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가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해 온라인 의료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

주요 위반사항

- ☑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 기관의 유치 행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의 범위

- ☑ 상담 또는 진료 예약을 받거나, 유치사업자나 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 ☑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 ☑ 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관련 조항

의료해외진출법 관련 규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주요 위반사례

- ☑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 기관의 유치 행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①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에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영어 외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상담이나 예약방법 등을 안내하고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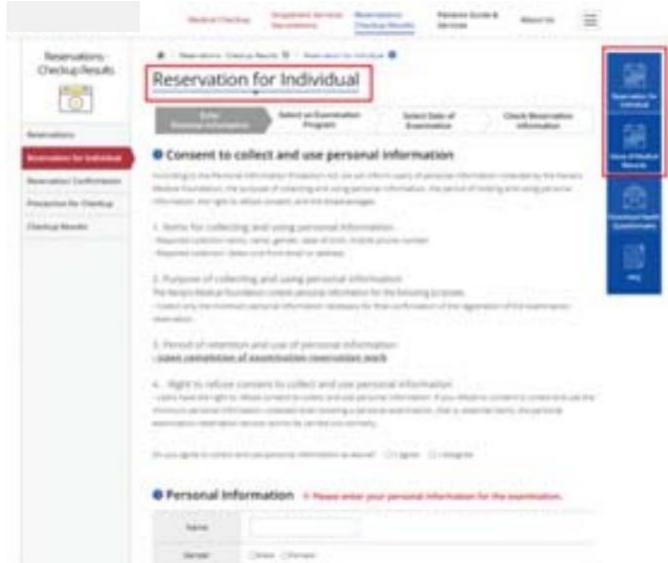
광고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미등록기관 - 외국어(중국어) 홈페이지 운영 - 연락처 및 메신저 ID 제공
위반내용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유치행위	

주요 위반사례

- ☑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 기관의 유치 행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①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에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영어 외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상담이나 예약방법 등을 안내하고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광고매체		홈페이지는 진료예약,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등록기관 - 외국어(영어) 홈페이지 운영 - 예약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홈페이지		
위반내용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유치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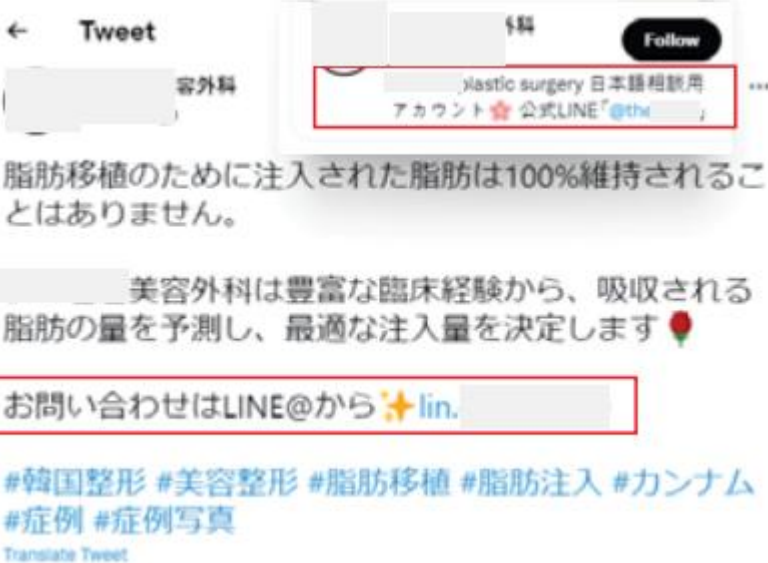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진료예약·체결에 해당되므로 유치행위

주요 위반사례

- ☑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 기관의 유치 행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②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이) SNS상 외국어 계정을 운영하며 상담 및 예약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가 외국어로 된 SNS 계정을 운영하며 상담 및 예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광고매체		
트위터 (일본)		미등록기관 - 트위터 병원계정 운영 - SNS(LINE) ID 및 링크 제공
위반내용	유치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의료기관/유치사업자의 유치행위	

주요 위반사례

- ☑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 기관의 유치 행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③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취소/폐업/미갱신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가 등록취소/폐업/미갱신 된 후에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유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됩니다.”

광고매체		미등록기관 - 유치기관 폐업 상태의 기관임에도 1:1 상담페이지, 상담전화번호, 카카오톡 ID 등 제공
홈페이지 (중국)		
위반내용	등록취소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유치사업자의 유치행위	

주요 위반사례

- ☑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 기관의 유치 행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④ 등록된 국내 네트워크 병원 지점 중 일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지점의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광고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미등록 20개 지점	국내 23개 병원 중 3곳만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도 클릭 시 정보 제공 화면으로 이동됨 - 전체 지점 중 일부 지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지점 주소(약도) 및 진료시간, 전문의 등 정보제공
위반내용	영어 외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미등록된 지점을 소개하는 행위	

주요 위반사례



Q&A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어 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2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사례



Q&A



2.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유치사업자가 미등록 유치기관 일 경우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24조(등록의 취소) 제1항 제4호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 소개·알선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록 취소된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같은 법 제2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1600-6767(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사례

Q&A



3.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단순 정보 제공(약도, 위치 등) 또는 홍보를 위해 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범위는 ①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 사업자나 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②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진료예약·계약체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한다.

-유치사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 받는 행위

②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SNS운영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의료 해외진출법(약칭)」제15조 제1항)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행위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③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하는 행위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 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 행위

주요 위반사례



Q&A



4. SNS 개인계정을 통해 병원을 소개하고, 통역이나 예약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때에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및 그 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 ‘영리의 목적’이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써 의료기관 뿐 아니라 유치사업자 또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면 유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계정을 통해 통역이나 예약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병원을 소개해주더라도 수수료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한다면 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요 위반사례



Q&A



5. 본점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한 네트워크 병원에서 외국어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지점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의 유치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서 이미 네트워크 병원의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의 위치(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각 지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점의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지점만이 가능하며, 전체 지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점별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요 위반사항

- ☑ (거짓정보제공)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관련 조항

의료해외진출법 관련 규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주요 위반사례

- ☑ (거짓정보제공)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① 의료기관 명칭을 변경해서 광고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원래 의료기관 명칭에서 진료과목(전문과목)명을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고매체	 整形外科医院 22-9-30 15:53 发布于 韩国 来自 微博 weibo.com ❤️ 医院 ❤️ 💡 眼部整形-追求自然曲线 活力明亮的眼神 💡 鼻部整形-拥有柔和弧度的鼻子 💡 面部轮廓-准确比率 完美鹅蛋脸 💡 胸部整形-完美曲线 保持胸部弹性 💡 抗衰中心-从根本上解决衰老原因 💡 体型整形-完美的S曲线 综合整形医院 帮你实现完美蜕变 #韩国 整形医院# #韩国整形#	“완벽한 변신을 도와줄 종합성형병원 한국 000 성형의원 - 등록기관명은 00의원이나 광고기관명 은 000성형외과병원 *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위반내용		

원래 의료기관 명이 아닌 진료과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광고

주요 위반사례

- ☑ (거짓정보제공)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① 의료기관 명칭을 변경해서 광고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원래 의료기관 명칭에서 진료과목(전문과목)명을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고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000피부과 한의원 - 등록기관명 000의원 - (광고기관명) 000 피부과 한의원 * 한의원 전문의만 있음
위반내용	원래 의료기관 명이 아닌 진료과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광고	

주요 위반사례

☑ (거짓정보제공)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없는 경우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실제로는 없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이며, 거짓정보 제공에도 해당하여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9조 1항의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광고매체	기관명 성형외과 전문의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등록한 전문의 진료과목) 성형외과의원 나의 병원 등록 정보수정 바로가기 바로가기 >진료과목 및 의사 현황 의사 수(학과 한의과 포함) 총 인원 : 21명 (전문직 : 20, 일반의 및 전공의 : 1) 전문직상세보기 진료과목별 (전문직수) 외과 (1) 산부인과 (0) 후수전문의를 포함하여 해당 진료과목별로 각각 상향되어야 하며, 총 전문의 수를 다룰 수 있음 상해외과 (13) 아비인후과 (2) 대외응급외과 (4) 가정의학과 (0) 진료과목별 (전문직수) 상해외과 (13) 아비인후과 (2) 피부과 (0) 통계다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의 보유과목 현황)
의료기관 홈페이지 / 아메바 (일본)	
위반내용	유치 등록 시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의료기관

주요 위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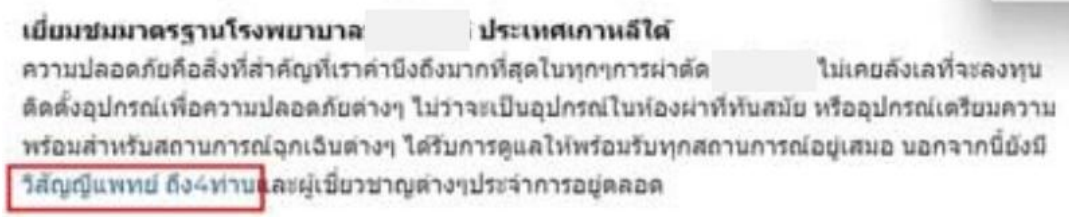
☑ (거짓정보제공)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전문의 보유 진료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문의 보유 진료과목) 이비인후과 -> (광고진료과목) 00성형외과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매체		
Oppa Me (태국)		“최대 4명의 마취과 전문의 ”
위반내용	해당 과목 전문의가 없음에도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표기한 광고	

주요 위반사례

☑ (거짓정보제공)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기관이 아님에도 지정마크(KAHF)를 사용하는 경우

“유치지정기관이 아님에도 지정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3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도 판단됩니다.

광고매체	
홈페이지	
위반내용	외국인환자 유치지정기관이 아님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지정기관 지정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주요 위반사례



Q&A



1. 해당 과목 진료를 보고 있는데 편의상 해당 과목명을 명칭으로 사용해 유치행위를 해도 되나요?

예) ○○의원 → ○○성형외과/○○피부과 로 변경 사용

인정받은 전문과목이 아닌데도 편의상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위해 해당 진료과목명을 이름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면 「의료해외진출법(약칭)」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거짓 정보 제공 및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3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평가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사례



Q&A



2. 등록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있어서 진료과목으로 등록을 했는데 현재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없다면 거짓정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제1항과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3호에서도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등록요건을 미준수하여, 「의료법」 제22조(시정명령)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고 등록한 진료과목에 변동이 있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변경 신청을 통해 전문의 변동에 따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건강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